

#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

농림부

농림부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(법률 제8107호, 2006. 12. 28. 공포, 2007. 6. 29. 시행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의무자조금 대의원총수를 조정하여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조성 과 운용을 도모코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.

## 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〉

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”을 “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”을 “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”을 “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50명”을 “13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200명”을 “1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“150명”을 각각 “8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육우: 80명

제4조 중 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”를 “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1의 비고란 중 “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사결과”를 “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축산자조 활동자금”을 “자조금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의 위반행위란 중 “거출금”을 각각 “의무거출금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자조활동자금”을 “자조금”으로 한다.

## - 부칙 -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의원 총수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대의원 회부터 적용한다. 